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November 15, 2024

Table of Contents

Tax News

-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향후 계획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발표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국세청, 투자확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정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2년 유예
- 올해 9월 누계 국세수입 255.3조 원, 전년 대비 11.3조 원 감소
- 경기도 고양시·화성시 일대 벤처촉진지구 지정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1호, 2024. 11.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 11. 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 11.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 10. 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 10. 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5호, 2024. 11. 11.)

최신 예규·판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하한규정 적용 시 장부가액의 의미
-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후 1년 이내 착공 시 추징 여부
- 피인수법인이 기업집단 편입 유예를 받은 경우의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여부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기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

Tax News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향후 계획 발표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추진상황을 금융·세제·재정 등 주요 분야별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원 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현황 및 향후 계획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발표(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2024년 9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공제율 상향 항구화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지원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5년 3월)
대상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 추가 검토 (조특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평가회를 거쳐 업계·부처에서 건의한 기술 추가 검토 (~2024년 12월)
R&D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 확대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기술 자문비 포함) 추가 - 인건비: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 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
가속 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5 → 3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발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5~2029년 합계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대부분의 세수 감소가 상속세·증여세(Δ 20조 1,862억 원)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항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Δ 11.7조 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인상(Δ 8.5조 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Δ 2.0조 원) 등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 및 하이 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조 5,742억 원) 및 기타 세목(+8,918억 원)에서 세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구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단위: 억 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소득세	Δ 1,431	Δ 3,721	Δ 4,347	Δ 979	Δ 818	Δ 11,296
법인세	15,258	Δ 2,316	Δ 4,082	766	Δ 16,188	Δ 6,562
부가가치세	2,535	3,863	3,322	3,059	2,963	15,742
상속세·증여세	Δ 26,154	Δ 43,927	Δ 43,927	Δ 43,927	Δ 43,927	Δ 201,862
기타	871	2,221	2,958	1,418	1,450	8,918
합계	Δ 8,921	Δ 43,880	Δ 46,076	Δ 39,663	Δ 56,520	Δ 195,060

기획재정부,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임



국세청, 투자확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투자확대·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요약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업 제외) 중 2025년 투자금액을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제출기간: 2024년 11월 1일~12월 2일)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2023사업연도 수입금액</th> <th>500억 원 미만</th> <th>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기업</td> <td>10% 이상</td> <td>20% 이상</td> </tr> <tr> <td>지역사업장 투자기업</td> <td>5% 이상</td> <td>15% 이상</td> </tr> </tbody> </table>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 시 기준비율 5% 완화 (지역사업장 외 수도권 사업장 투자 시 지역투자 금액비율이 80% 이상이면 지역투자기업 간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업 제외) 중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4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제출기간: 2024년 11월 1일~12월 2일)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일자리 창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2023사업연도 수입금액</th> <th>500억 원 미만</th> <th>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기준비율</td> <td>2% 이상</td> <td>3% 이상</td> </tr> </tbody> </table>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제외 (법인만 해당)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은 사업장 제외 (개인만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제외 												



정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2년 유예

정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가족친화 인증기업(2023년 기준 4,110개 사)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 사)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올해 9월 누계 국세수입 255.3조 원, 전년 대비 11.3조 원 감소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7.4조 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0.4조 원 소폭 증가하고, 다만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5.7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경기도 고양시·화성시 일대 벤처촉진지구 지정,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장항동·식사동 등 8개 행정동 일대와 화성시 영천동·방교동·석우동 등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벤처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은 2025년 말까지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지원 혜택(지특법 §58 ④)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의 5개 부담금 면제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등의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최신 주요 개정 동향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1호, 2024. 11.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 11.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 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 11.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 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며,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 10. 3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 10. 3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5호, 2024. 11. 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신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하한규정 적용 시 장부가액의 의미

■ 쟁점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상증법 §60~§66)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증법 §60 ③ 및 §66, 이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령 §55 ①, 이하 ‘장부가액 하한 규정’). 이번 판결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에 대해 장부 가액 하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가 투자 주식의 ‘회계상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즉 투자주식의 ‘취득 가액’인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원고는 장부가액 하한 규정의 괄호 부분, 즉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 한 가액’으로 정의한 규정은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는 규정이므로, 투자주식 같은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괄호 부분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보다 부합하는 ‘회계상 장부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증법에서 장부가액 하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주식의 경우에 도 괄호 부분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대법2024두41069, 2024. 9. 12.)

■ 시사점

-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국세청도 상증법상 장부가액 하한 규정에서의 장부가액을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회신하면서(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 6. 21.),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신한 기준 유권해석을 삭제하여 장부가액 하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므로(2019년 6월 20일 국세청 세법해석 정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투자주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후 1년 이내 착공 시 추징 여부

■ 쟁점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지특법 §71 ①, ‘쟁점 감면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특법 §178 ①, ‘일반적 추징규정’).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1년 내의 착공 행위를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 이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은 착공 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착공행위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토지를 매각하면 추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착공만 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지방세특례제도과-510, 2023. 10. 30.), 이번 심판례는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2023자4190, 2024. 8. 13.)

■ 시사점

- 따라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록 1년 내에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했더라도,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심판례의 입장으로 판단되며, 다만 최근 지특법 개정안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을 추징사유로 신설할 예정이므로(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2024년 8월 13일 참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피인수법인이 기업집단 편입 유예를 받은 경우의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여부

■ 쟁점사항

-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규정에서는 피인수법인의 기존 지배주주가 인수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공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12의 4 ① 4호, '지배주주등 변경 요건'), 이 때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법령 §43 ③·⑦ 및 법령 §2 ⑧ 7호), 기존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된 피인수법인의 주식 일부를 계속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과 함께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므로, 인수법인은 지배주주등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2021. 6. 22, 조심2022중0014, 2022. 5. 24.),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피인수법인이 기업집단 편입 유예를 받고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일부 보유하면서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인수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피인수법인의 기존 대표이사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면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더라도, 피인수법인과 기존 대표이사는 각각 인수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아니므로, 피인수법인의 기존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인수법인의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 8. 19, 사전-2023-법규법인-0184, 2024. 8. 28.)

■ 시사점

- 따라서,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피인수법인의 기존 지배주주가 피인수법인의 일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더라도,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인수법인은 해당 피인수법인 주식 취득에 대해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기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

■ 쟁점사항

-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 16일 ~2012년 12월 31일의 기간('기본세율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008. 12. 26. 개정 소법 부칙 §14 ①, 2010. 12. 27. 개정, '쟁점 부칙'),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다주택자가 기본세율 특례기간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준공된 주택(이하 '쟁점 주택')을 기본세율 특례기간 경과 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 부칙에 따라 기본세율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 부칙의 입법취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수요 진작에 있는 점, 유권해석도 기본세율 특례기간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쟁점 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 2. 11, 부동산거래관리과-331, 2010. 3. 3.)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쟁점 부칙의 문언상 취득 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취득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도 쟁점 부칙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음 (조심2024서2629, 2024. 9. 3.)

■ 시사점

- 따라서, 이번 결정례는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다주택자가 기본세율 특례기간(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에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유상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상속·증여 등을 원인으로 무상 취득한 주택을 기본세율 특례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 거래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쟁점 부칙의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취득의 원인을 제한하지 않는 쟁점 부칙의 문언에 따라 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공 성 덕 Managing Director

seongdeok.kong@pwc.com
02-709-7056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